참고자료

한-싱 디지털동반자협정(DPA) 주요 내용

2022. 4

산 업 통 상 자 원 부

참고자료

목 차

Ⅰ. 개요 ····· 1

Ⅱ. 주요 조항별 내용 ····· 2

1. 전자적 전송 무관세 ····· 2
2.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····· 2
3. 전자인증·전자서명 ····· 2
4. 종이 없는 무역 ····· 2
5.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····· 2
6. 컴퓨팅 설비의 위치 ····· 3
7. 개인정보 보호 ····· 3
8. 소스코드 공개 금지 ····· 3
9.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(스팸 메시지) ····· 3
10. 온라인 소비자 보호 ····· 4
11. 사이버보안 협력 ····· 4
12 인공지능 협력 ····· 4
13. 핀테크 협력 ····· 4
14.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,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 ····· 4

참고자료

Ⅰ. 개요

□ (**의의**) **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**으로, 최근 디지털전환 추세를 반영한 **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**을 합의

○ 싱가포르는 **우리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FTA 체결국**으로, 아세안에서도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 있는 **디지털 허브 국가***에 해당

* 싱가포르는 디지털경쟁력평가('20, IMD) 2위(韓 8위), ②글로벌혁신지수('20, WIPO) 8위(韓 5위), 또한 싱·뉴·칠 DEPA, 싱-호 DEA 등 다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

○ 양국은 '20.6월 협상 개시선언 이래 10차례 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상을 거쳐 '21.12월 **협상 타결 선언,** 이후 양측간 각 조항별 법률 검토(legal scrubbing)를 거쳐 '22.3월 **협정문안**(영문본) **확정**

□ (**구성 및 주요 내용**) 본문(7개 조항) 및 부속서(34개 조항 및 부속서한)로 구성하여 **기존 한-싱 FTA 전자상거래 챕터를 대체**

* 기존 한-싱가포르 FTA('06년 발효) 전자상거래 챕터는 ▲정의, ▲적용범위, ▲서비스의 전자적 공급, ▲디지털 제품 등 4개 조항으로 간략 구성

○ ▲전자상거래 원활화, ▲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, ▲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**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** ▲AI, ▲핀테크 등 **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** 포함

분야	주요 조항
전자상거래 원활화	전자인증·전자서명, 디지털제품 무관세, 종이없는 무역, 핀테크 협력 등
온라인 소비자보호	개인정보 보호, 온라인소비자 보호, 스팸 메시지 규제, 사이버보안 협력 등
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	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,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, 소스코드 공개 금지,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, 인공지능(AI)·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

○ '22.2월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, 싱가포르 포함 15개국) 대비 **디지털 통상규범의 범위를 확대**하고 **디지털 신기술 협력 조항 포괄**

* RCEP 대비 소스코드 공개 금지, 인공지능·핀테크·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신규 추가

□ (**기대 효과**) 양국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**전통적인 상품·서비스 거래**뿐만 아니라 **디지털 콘텐츠 교역**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

○ 특히, 우리 중소·창업 기업이 **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아세안 시장**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Ⅱ. 주요 조항별 내용

□ 전자적 전송 무관세 (부속서 가 제14.5조)

○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*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**

*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, 문자열, 동영상, 이미지,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

** WTO 체제하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가 1998년 이래 유지되고 있으나, 양국간 합의를 통해 양자간 영구 무관세를 규정함에 따라 불확실성을 해소

- 단,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내국세·기타 부과금은 부과 가능

□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(부속서 가 제14.6조 및 부속서한)

○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동종의 자국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

- 단, 정부 보조금 예외를 인정하며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음

□ 전자인증 · 전자서명 (부속서 가 제14.8조)

○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, 거래 당사자가 적절한 전자인증 방식을 상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상호 운용 가능한 인증 사용 장려

□ 종이 없는 무역 (부속서 가 제14.12조)

○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종이 문서와 동등하게 인정함

○ 무역행정문서 등 문서접수를 위한 단일접수창구를 마련하고, 관련 데이터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함

□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(부속서 가 제14.14조)

○ 개인정보를 포함하여,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되,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*상 필요한 경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

채택·유지할 수 있음

*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상 예외(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(LPPO))를 인정하되, ①자의적·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이 아니면서, ②필요이상의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규정

□ 컴퓨팅 설비의 위치 (부속서 가 제14.15조)

○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을 금지함으로써, 기업이 원하는 곳에 서버를 둘 수 있도록 보장하되,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*상 필요한 경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·유지할 수 있음

*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상 예외(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(LPPO))를 인정하되, ①자의적·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이 아니면서, ②필요이상의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규정

□ 개인정보 보호 (부속서 가 제14.17조)

○ 전자 거래상 개인정보 보호의 경제적·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발전에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함

○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법체계를 채택·유지하며,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비차별적인 관행을 채택함

□ 소스코드 공개 금지 (부속서 가 제14.19조)

○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·유통·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 및 접근 요구를 금지함

- 단,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 장치를 조건으로, 수사·검사·조사·집행조치 또는 사법 절차나 행정절차를 위하여 소스코드(또는 포함된 알고리즘)을 보존하거나 관련기관이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요구 가능

□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(스팸 메시지) (부속서 가 제14.20조)

○ 스팸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거절 및 사전 동의, 스팸 메시지 최소화 등 스팸 메시지를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

□ **온라인 소비자 보호** (부속서 가 제14.21조)

○ 전자상거래상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활동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함

□ **사이버보안 협력** (부속서 가 제14.22조)

○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 증진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, 사이버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함

○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역량 구축,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 등의 중요성을 인정함

□ **인공지능 협력** (부속서 가 제14.28조)

○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(AI)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틀의 개발이 중요함을 인정함

○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,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 장려 및 경험 공유를 통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함

□ **핀테크 협력** (부속서 가 제14.29조)

○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 개발 증진을 포함하여, 양국의 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함

□ **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,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** (부속서 가 제14.31조)

○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개발 및 채택 촉진을 위하여 지역·다자 또는 국제포럼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함